

의안번호	2213010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1.
추 계 번호	25F453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법인세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 최저한세율 인하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대비 2%p 인하할 경우, 법인세는 2026년 454억원, 2030년 2,10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8,869억원(연평균 1,77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단, 동 추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한 기업의 유효세율이 일괄적으로 15% 이하일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에 따라 세수효과를 과다 추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법인세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2%p 인하(안 제132조제1항)	-454	-2,104	-2,104	-2,104	-2,104	-8,869	-1,774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
1	안 제132조제1항 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	○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과세표준 1,000억원 이상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2%p 인하 <현행: 중소기업 제외> <table><tr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최저한세율</th></tr><tr><td>100억원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</td><td>12%</td></tr><tr><td>1,000억원 초과</td><td>17%</td></tr></table> ⇒ <개정안: 중소기업 제외> <table><tr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100억원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</td><td>12%</td></tr><tr><td>1,000억원 초과</td><td>15%</td></tr></table>	과세표준 구간	최저한세율	100억원 이하	10%	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12%	1,000억원 초과	17%	과세표준 구간	세율	100억원 이하	10%	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12%	1,000억원 초과	15%	
과세표준 구간	최저한세율																		
100억원 이하	10%																		
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12%																		
1,000억원 초과	17%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 구간	세율																		
100억원 이하	10%																		
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12%																		
1,000억원 초과	15%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 고
1	안 제132조제1항 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
 - 법인세 확정신고 등을 고려할 경우 2026년 귀속분에 대한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지만,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효과의 일부가 2026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의 세수효과는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했으며,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
 - 향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및 부담세액 등은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와 동일하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 적용 기업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, 부담세액 및 1기업당 부담세액의 증감추이는 일정하지 않음
 - 2024년 신고 기준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1기업당 부담세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1기업당 과세표준에 유효세율¹⁾이 일괄적으로 2%p 감소한다고 가정
 - 이론상 최저한세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개별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전 유효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
 - 동 추계에서는 현행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유효세율이 15% 이하([표 2] 기준 A구간)일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1) 동 추계에서 유효세율은 과세표준 1,000억원 구간내에서의 총부담세액/과세표준을 의미

[표 2] 유효세율 구간별 세수효과

최저한세 적용 전 유효세율	15%		17%
	(A)	(B)	(C)
<최저한세 적용여부>			
	(A)	(B)	(C)
현행(17%)	적용	적용	미적용
개정안(15%)	적용	미적용	미적용
세수효과	과세표준×2%	과세표준 × (17% - 유효세율)	없음

-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은 중소,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수준으로 가정
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이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평균 수준으로 가정
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경우, 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된 점을 반영하여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을 1로 가정
- 한편,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에서 유효세율 15% 이상인 기업이 이월공제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동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 - 해당 추계를 위해서는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 중 이월공제가 존재하는 기업 비율 및 이월공제 규모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지만, 관련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- (최저한세 적용 법인 신고현황) 최근 5년(2020~2024년, 신고기준)간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 수는 2020년 9개사에서 2024년 23개사로 증가

- 1기업당 부담세액은 2020년 309억원에서 2023년 3,571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89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3]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 적용기업 신고 현황

(단위: 개, 억원)

신고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
신고법인 수(A)	9	10	10	19	23
부담세액(B)	2,781	5,390	4,677	67,857	20,598
1기업당 부담세액(B/A)	309	539	468	3,571	896
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(TASIS)

-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세부구간의 기업수 및 1기업당 부담세액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의 세부구간별 최저한세 적용기업 신고 현황: 2024년

(단위: 개, 억원)

과세표준 세부구간	신고법인 수(A)	부담세액(B)	1기업당 부담세액(B/A)
1,000억원 ~ 3,000억원	14	3,056	218
3,000억원 ~ 5,000억원	3	1,701	567
5,000억원 초과	6	15,839	2,640
계	23	20,598	896
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(TASIS)

- (1기업당 과세표준 및 세수효과 추정) 향후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기업수 및 1기업당 부담세액 분포가 2024년 신고기준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, 1기업당 과세표준 및 세수효과 추정

-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의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유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(17%)와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, 과세표준 세부구간별로 1기업당 과세표준을 추정

$$- 1\text{기업당 과세표준} = 1,000\text{억원} + (1\text{기업당 부담세액} - 118\text{억원})/17\%$$

※ 118억원은 하위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최저한세액²⁾을 의미

- 추정된 과세표준에 유효세율 변화분을 곱하여 1기업당 세수효과를 추정

$$- 1\text{기업당 세수효과} = (1\text{기업당 과세표준} - 1,000\text{억원}) \times 2\%p$$

2)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 10%, 100~1,000억원 구간에서 12%가 적용됨
118억원 = (100억원 × 10%) + {(1,000억원 - 100억원) × 12%}

[표 5] 과세표준 세부구간별 1기업당 과세표준 및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개, 억원)

과세표준 세부구간	1기업당 부담세액	1기업당 과세표준	1기업당 세수효과
1,000억원 ~ 3,000억원	218	1,590	11
3,000억원 ~ 5,000억원	567	3,642	53
5,000억원 초과	2,640	15,834	297

□ (전체 세수효과 추정) 과세표준 세부구간별 1기업당 세수효과에 기업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하면, 연간 2,104억원 수준

- 과세표준 세부구간별 1기업당 세수효과 추정치에 2024년 신고 기준 기업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
 - 향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및 부담세액 등은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2026년(귀속연도) 이후 연도별 세수효과는 2,104억원 수준

[표 6] 과세표준 세부구간별 전체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개, 억원)

과세표준 세부구간	신고법인 수(A)	1기업당 세수효과(B)	전체 세수효과(A×B)
1,000억원 ~ 3,000억원	14	11	165
3,000억원 ~ 5,000억원	3	53	159
5,000억원 초과	6	297	1,780
계	23	-	2,104

□ (납부시점 배분)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효과 기간을 반영

-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3~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

[표 7]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

납부시점 귀속 사업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2026	(중간예납)					
2027		(중간예납)				
2028			(중간예납)			
2029				(중간예납)		
2030					(중간예납)	

- 대기업 기준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중을 반영하여 2026년 세수효과를 산정
 -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평균 비중(36.9%)을 반영하여 산정
 -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중은 대기업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외 기업을 구분한 후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중은 1로, 그 외 기업의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비중을 적용하여 58.5%로 산정
- ※ 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된 점을 반영

[표 8] 2026년 귀속분 세수효과와 2026년 중간예납 반영분 산정
(단위: 조원, %)

과세표준 구간	2026년 귀속분 세수효과(A)	중간예납 반영 세수효과 (A×36.9%×58.5%)
1,000억원 ~ 3,000억원	165	36
3,000억원 ~ 5,000억원	159	34
5,000억원 초과	1,780	384
계	2,104	454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대비 2%p 인하할 경우, 법인세는 2026년 454억원, 2030년 2,10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8,869억원(연평균 1,77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단, 동 추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한 기업의 유효세율이 일괄적으로 15% 이하일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에 따라 세수효과를 과다 추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법인세 과세표준 1,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2%p 인하(안 제132조제1항)	-454	-2,104	-2,104	-2,104	-2,104	-8,869	-1,774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